

불천狂犬病予防治對策

- ①. 期間 : 4. 23 ~ 5. 12 (20日間)
- ②. 實施頭數 : 35,000頭
- ③. 實施者 : 管内家畜病院 165所
- ④. 施行料 : 1,500 원 痘主負担
- ⑤. 預防費 : 市場支援費購入 (總當 300원)

분류기호 문서번호		농축27465-31	기안용시	시행상 특별취급
		(전화: 773-2678)	시	창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③. 1.		
수신처 보존기간		3년		
시행일자		90. 3. 20.		
보 조 기 관	산업경제국장 전경	협 조 기 관	부서(통제) : 농무성장관 구현 1990. 3. 20 통제관	
	농축과장			
	가축위생기획관			
기안책임자		한국학		
경 유 수 신 참 조	각 안 참 조	발 신 명 의	시 장	발송인 1990. 3. 20 서울특별시
제 목		90년도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p>제 1 안</p> <p>수신 : 내부결재</p> <p>제 목 : 같은건</p> <p>1. 농축27465-150(90.1.31)호 90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과 관련 됩니다.</p> <p>2.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통령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하고 각안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고시방법: 시보개재)</p> <p>기 간: 90. 4. 23 ~ 5. 12</p>				

나. 두 수: 35,000두

다. 대 상: 관내에서 사용하는 개 (3개월령 이상)

라. 요 령: 구청별 자체계획 수립 실시

1) 시술은 공수의 및 개업수의사동원 실시

2) 예방주사를 필한 개에 대하여는 실시증명서 발급 및

축건폐를 축주에게 교부.

마. 흥 보

1) 각구에서는 동.통.반조직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방법

강구.

2) 공보관은 매스콤을 통한 홍보

3) 서울시 수의사회에서는 회운영 계획에 따라 홍보방법

강구.

4)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를 통한 홍보

5) 지하철공사는 열차내 방송을 통한 홍보

바. 시술료 및 예방약등 구입

1) 시술료: 두당 1,500원(축주부담)

2) 시술재료: 시술수의사부담

3) 예방약: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70%는 본청에서 구입 배정

. 지방비30%는 구청별 구입

. 본청 배정분에 대하여는 인수증 제출

4) 실시증명서, 축건폐: 구청별 구입

사. 기타

1) 시술수의사: 예방주사 실시대장 비치기록하여 3년간

보관철저. 실시증명서, 축건폐 발급

2) 구 청: 가축병원 지도, 감독철저

. 예방주사 실시대장 비치 및 기록 보관상태

수시점검하고 사업 종료후 동물병원에서 보고된 실적의 사실여부를 확인한후 실시 결과를보고하고 예방주사 실시사본은 관계서류와 함께 3년 보관할것

3) 방견단속: 각구는 예방주사 실시 기간중 특별단속 실시

첨 부: 1.고시(안) 1부.

2. 90년도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계획 1부.

제 2 안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산업과장

제 목: 갈운건

1. 농축27465-150(90.1.31)호 90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과

관련됨.

2. 다음과 같이 90년도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코자하니

실시기간중 약품보관을 철저히 하고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가.

사
제1안 가 - 사항 이기시행

첨 부: 1. 90년도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계획 1부

2. 고시문 1부

수신처: 서 구 1- 22

제 3 안

수 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참 조: 학무국장

제 목: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에 대한 계도 의뢰

1. 90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광견병 예방주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개를 지르는 가정에서는 박집없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2. 특히 광견병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주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방역이

중요시되는 전염병이오니 이를 특별히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1안 가 — 사항 이기시행

사.

첨 부: 고시문 1부.

제 4 안

수 신: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회장

제 목: 같은건

1. 90년도 우[시]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제1차 광견병예방주사를 다음과 같이

같이 실시코자하오니 귀회 운영계획에 따락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본 사업 수행에

좋은 실적이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1 안 가 — 사항 이기시행

사.

첨 부: 고시문 1 부

제 5 안

수 신: 지하철공사 사장

제 목: 같은 건

1. 90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
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별첨 내용을 홍보의뢰하오니 열차내
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홍보문 1 부.

제 6 안

수 신: 농림수산부 장관

참 조: 가축위생과장

제 목: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보고

1. 90년도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제 1차 광견병 예방주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보고합니다.

가. 실시기간: 90. 4. 23 ~ 5. 12

나. 실시두수: 35,000두

제7 안

수 신: 공보관

발신: 산업경제국장

제 목: 같은 건 고시 및 홍보요청

1. 90년도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제 1차 광견병 예방주사를 별첨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내용을 매스콤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고시문 1부.

2. 보도자료 1부.

제 8 안

수 신: 내무국장

발신: 산업경제국장

참 조: 행정과장

제 목: 반상회 공지사항 게재 의뢰

1. 90년도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제 1차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를 거두코자 하오니 별첨 내용을 4월 반상회
공지사항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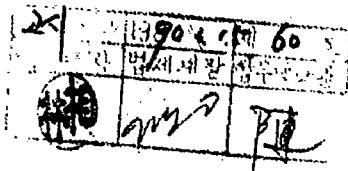
첨 부: 반상회 공지사항 자료 1부.

90년도 제 1차 광전병 예방주사 개획

(단위: 두, 두분)

구별	계획량	약품 배정	내용
총 토	1,000	700	• 실시기간: 90. 4. 23 ~ 5. 12
증 탕	700	490	
용 산	1,400	980	• 실시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개
성 동	2,700	1,890	(3개월령 이상)
동 대 문	1,400	980	• 소요경비: 약품비: 국비 70%
증 탕	1,400	980	지방비 30%
성 북	3,300	2,310	• 국비 70%는 본청에서 구입 배정
도 봉	2,900	2,030	• 지방비 30%는 각구별 자체구입
노 원	1,000	700	
은 평	3,000	2,100	• 기타사항
서 대 문	2,000	1,400	시술수의사: 예방주사 실시대장 비치, 기록
마 포	2,500	1,750	보관(3년) 및 실시증명서,
강 서	1,100	770	축견폐발급
양 천	1,800	1,260	
구 토	900	630	구 청: 가축병원 지도 감독처
영 등 포	1,200	840	(예방주사 실시대장비치, 기록
동 작	1,500	1,050	보관상태 수시점검)
관 약	2,100	1,470	
강 남	800	560	
서 초	1,200	840	• 예방주사 실시기간중 방건 특별 단속 실시
강 동	500	350	
송 파	600	420	
계	35,000	24,500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 호

광건병 예방주사 실시

다음과 같이 광건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90. 3.

서울특별시장

1. 목적 : 광건병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함.
2. 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모든 개.(3개월령 이상)
4. 장소 : 인근 동물병원
5. 기간 : 90. 4. 23 - 5. 12
6. 기타 :

본 기간중 예방주사를 필하지 않은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은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됩니다.

홍 보 문

서울시에서는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광견병 예방

주사를 실시합니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는 무서운

전염병이므로 집에서 기르는 개는 빠짐없이 예방 접종보록

합시다.

예방접종은 인근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며 시술료는 1,500원

입니다.

서울시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송요청시간 ; 4.20 - 5.10

반상회 공지사항

제목 :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안내

- 0. 실시기간 : 90. 4. 23 -5. 12
- 0. 주사시술료 : 두당 1,500원(축주부담)
- 0. 예방약 : 서울시에서 부담
- 0. 시술장소 : 인근 동물병원

서 울 특 별 시



보도자료

제공일자	1987년 3월 일
제공부서	농축과 가축위생과
연락전화	(일반) 02-511-1111 (행정) 02-511-1111

제목 :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서울시내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보건에 기여코자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내전역에 걸쳐 개 35,000두를 대상으로 봄철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합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는 이 기간중에 시내 전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며 예방약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시술료 1,500원은 개를

기르는 주인이 부담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밝게되고 개주인은 고발됩니다.

관련 법규 발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검사, 주사, 검시, 약육 또는 투약을 실시)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하여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을 받을것을 명할 수 있으며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리 수의사를 두게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에 대한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명령을하거나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 종개 및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명령을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사항을 검사, 주사, 약육 투약 또는 정기검사의 실시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살처분 명령)
시 도지사는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마치지 아니한 축건이 육외에서 배회하는것을 발견한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억류하거나 살처분 기ata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광견병이란
모든 온혈동물의 급성 전염병으로서 광증, 정신장애를 나타내며 결국에는 마비되어 거의 예외없이 죽게되는 병으로 개가 물었을때 침을 통하여 전염되는것이 특징임.